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변우정 의원 외 5인)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(변우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8. 12.

발 의 자 : 변우정·이정호·
강영석·한창화·
권영만 정상진의원(6인)

찬 성 자 : 15인

1. 폐지이유

- 「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개정(조례 제3294호, 2011. 12. 26)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「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폐지 조례안 : 불 입

3. 관련법령

- 「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8조<조례 제3294호, 2011. 12. 26>

4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해당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해당부서(친환경농업과)의견
 -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(조례 제2917호, 2006.4.3.제정)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(조례 제3294호 2011.12.26.)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[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]

(조례 3294호, 2011. 12. 26 개정)

제8조(기금사업의 대상)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개정 '07. 9.27>

1.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
2.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
3.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
4.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
5.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
6.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
7.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
8.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<개정 '11.12.26>
9. 기금의 운용,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
10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제정) 2006-04-03 조례 제 2917호

(일부개정) 2006-11-09 조례 제 294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.

1.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
2.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
3. 친환경농산물 생산·판매촉진 사업
4.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
5.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
6. 기타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5조(기금의 존속기간) 본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.

②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
2. 국·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
3.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

제7조(기금의 심의)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한다.

②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기금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<신설 '06.11.9>
5.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<신설 '06.11.9>

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농수산국장 <개정 '06.11.9>

2. 기금출납원 : 담당사무관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11.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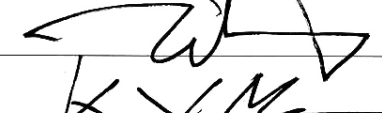
▶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(집행기관)

해당부서 검토의견서(친환경농업과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친 환 경 농 업 과	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	○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(조례 제2917호, 2006.4.3.제정)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(조례 3294호 2011.12.26.)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 ※ 관련법령 [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] (조례 3294호, 2011. 12. 26 개정) 제8조(기금사업의 대상)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개정 '07. 9.27> 8.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<개정 '11.12.2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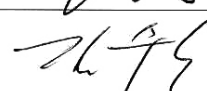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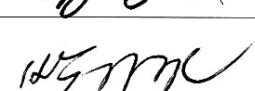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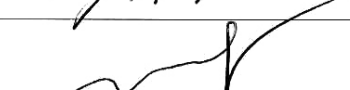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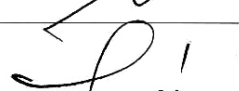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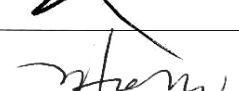
발의 서명부

(제명 :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)

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배 우 립	배우립	
기 성 호		
강 영 석		
한 강 화		
권 영 만		
이 상 재		

찬성 서명부

(제명 :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)

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서 정 숙		
윤 성 규		
이 명 식		
이 경 언		
이 태 자		
김 우 응		
전 영 기		
김 종 원		
박 기 현		
박 병 현		
박 진 현		
이 상 영		
장 도 욱		
김 지 현		
전 찬 기	